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348

발의연월일: 2023. 1. 6.

발 의 자: 김승남 · 김병주 · 김영호

김용민 · 김의겸 · 김홍걸

양경숙・유정주・윤건영

윤영덕 • 인재근 • 정태호

최종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,365대에 달했고, 전국 3,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, 트랙터 등 농업기계 4,682대 중 59.9%인 2,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,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,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·처리하고,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.(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7 및 제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7(폐농기계의 수거·처리 등)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기계(이하 "폐농기계"라 한다)의 수거 및 처리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(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 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폐농기계를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수거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농기계의 수 거·처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농기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수거·처리의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거·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

- 제8조의8(농업기계의 강제 처리)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,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 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기계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잔액을 공탁(供託)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

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한다.

1. 제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8조의7(폐농기계의 수거·처리 등)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기계(이하 "폐농기계"라 한 다)의 수거 및 처리를 특별자 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(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할 수 있다.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할 수 있다.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해당 폐농기계를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수거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조사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거·처리의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 거·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고,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8조의8(농업기계의 강제 처리)

-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 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 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 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 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 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 의 처분 등을 하거나, 그 농업 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

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 업기계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 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 또는 폐 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 계의 소유자에게 잔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기계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잔액을 공 탁(供託)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19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u>1.</u> (생 략) 1의2.·1의3. (생 략)

- 2. ~ 13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농림축</u>산식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- 1. 제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 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
- 1의2.(현행 제1호와 같음)1의3. 1의4.(현행 제1호의2및 제1호의3과 같음)
- 2. ~ 1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4 -----
